

대구지방법원 2023. 8. 9 선고 2021가단1174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
담당변호사 이원창

피 고 A
변 론 종 결 2023. 7. 5.
판 결 선 고 2023. 8. 9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춘천시 C 전 301㎡에 관하여 2020. 7. 8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: 춘천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 한다),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차전230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. 12. 23. "D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,309,629원 및 그 중 316,575,889원에 대하여는 2020. 12. 8.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"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그 지급명령이 2021. 3. 24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는 2020. 7. 8.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춘천시 C 전 301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2020. 7. 2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, 이 법원의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명 회신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, G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2)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. 7. 8.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B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

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,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D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, ③ 실제로 2020. 8. 21.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D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고, 그 후 2020. 12. 8.경에는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,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살피건대, 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B은 당시 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,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

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,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

1)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,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,

배당금지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,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(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67806 등 판결 참조).

2)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20. 4. 3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조합, 채권최고액 60,000,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, 근저당권자 G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. 12. 1. 춘천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, 위 경매절차에서 2022. 6. 21.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게 52,891,052원을, 피고에게 잉여금 61,684,5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, 원고는 2022. 6. 3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배당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금채권의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,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 117,095,000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,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부동산 가액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성욱

별지

채권의 표시

춘천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(소관: 춘천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출급청구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. 끝.

